

## 초·중학교취학원조제도 알림

오사카시교육위원회

오사카시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아동·학생의 학습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취학원조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시립의 초·중학교에 통학하는 아동·학생의 보호자로서 원조를 희망하는 분은 신청 해주십시오.

## 1 신청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이유	증명서류
○ 2020년도 또는 2021년도의 시민세가 비과세이다	「시민세·부민세 특별징수 세액의 결정·변경통지서」(근무처에서 교부) 의사본 「시민세·부민세 증명서」(시세사무소·구청에서 발급) (원칙적으로 원본이 필요합니다) ※ <u>세금 정보의 이용에 동의하실 경우,</u> <u>상기 증명서류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u> (단, 2021년도 비과세 인분에 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징수 유예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료(변경) 결정통지서」 (자택에 송부) 의사본
○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있다 (특별아동부양수당, 아동수당이 아닙니다)	「아동부양수당증서」 (구청 보건복지센터에서 교부) 의사본
○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다	증명서류 제출은 불필요

<p>○ 2020년도 또는 2021년도에 생활보호를 정지 또는 폐지되었다.</p>	<p>「보호정지 ( 또는 폐지 ) 결정에 대해서」          ( 자택에 송부 ) 의사본</p>
<p>○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 전원(단, 2003년 4월 2일 이후 출생자는 제외) 의전년도 소득 합계액이, 교육위원회가 세대 인원 수와 주택의 소유 상황에 따라 별도로 정한 소득 기준액이 하이여야 한다.          (※ 소득 기준액에 대해서는 뒷면의 표에 기재)</p>	<p>「시민세 · 부민세 특별 징수 세액의 결정 · 변경 통지서」 ( 근무처에서 교부 ) 의사본          「시민세 · 부민세 증명서」 ( 시 세사무소 · 구청에서 발급 ) ( 원칙적으로 원본이 필요합니다)          「시민세 ·          부민세 납세 통지서 겸 세액 결정(충당) 통지서 및 과세 증명서」 ( 자택에 송부 ) 의사본          ※ 세금 정보의 이용에 동의 하실 경우,          상기 증명서류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p>

신청에 걸리는 시민 여러분의 부담 경감과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내 거주자 인분 ( 2021 년 1 월 1

일 현재 ) 에 대해서는, 신청자 및 그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 교육위원회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오사카

시의 개인 시민세 과세 대장에서 심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 정보의 제공은 당해년도(2021년도)의 것에 한정되므로, 전년도의 시민세 가비 과세라는 이유로

신청하신 경우, 세대원 전원(2003년 4월 1일 이전 출생자, 세대주의 공제 대상 배우자 또는 부양 친족으

로 신고된 분은 제외합니다.) 의 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세금 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또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 정보의 제공을 받을

수있는것이아니므로경우에따라서추가증명서류의제출을부탁하는경우도있습니다.

## 2 원조내용

◇학교교재비◇학교급식비◇소풍등특별활동비◇수학여행비◇입학준비보조금◇의료비

◇독립행정법인일본스포츠진흥센터공제적립금 (보호자부담분)

- 의료비원조대상이되는병은,학교의정기건강진단등에서발견된다음과같은병입니다.치료가필

요한경우는학교가의료권을발급하므로반드시진찰을받기전에학교에신청해주십시오.

※병명 : 충치, 만성축농증, 중이염, 결막염, 기생충병, 아데노이드, 백선, 옴, 고름딱지증,

트라코마

- 생활보호 ( 교육원조를받고있는분은원조내용중에서수학여행비,의료비,독립행정법인일본스포츠진흥센터공제적립금(보호자부담분)이원조대상입니다.

## 3 신청방법

- 아동 · 학생이통학하고있는학교에서신청용지를받아주십시오.
- 신청서에필요사항을기입 ·날인하여신청이유를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아동 · 학생이통학하고있는학교에1장제출해주십시오.
- 신청기한은3월부터6월말까지입니다.세금정보의이용에동의하는경우는5월14일까지입니다.

연도도중에도신청할수있지만,학교교재비등은인정일이후에구입한것과실시한행사비용이대

상이며,급식비는인정일이후에습식분이대상으로,초등학교는실비액,중학교는실비액의2분의

1을원조합니다.인정일이후에학교징수금의징수가없을경우는, 지급이없는경우가있습니다.

※【소득기준액】세대전원의 2020 년도합계소득금액이오사카시가정한소득기준액이하일경우해당

됩니다. 2021년도 소득기준액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책정된 후 다시 알려드립니다.

아래에 2020년도 소득기준액을 게재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2020년도 소득기준액】

세대인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주택의 형태	셋집등	219만엔	263만엔	322만엔	358만엔	398만엔	471만엔
	자기집	155만엔	199만엔	257만엔	293만엔	333만엔	394만엔

※ 2021년도 소득기준액은 2021년 4월 1일 이후 교육위원회 홈페이지

( <https://www.city.osaka.lg.jp/kyoiku/page/0000495254.html> ) 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것은 학교에 상담해 주십시오.